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전문위원 신훈

2021. 6. 21.

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.06.01.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, 2021.06.02.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(의안번호 제2620호).

2. 제안이유

청소 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“환경공무관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조례 본문 중 “환경미화원”을 “환경공무관”으로 변경함.(안 제명, 제1조부터 제3조까지, 제5조, 제6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　　타
1) 입법예고(2021. 4. 22. ~ 2021. 5. 12.) 결과 : 의견 없음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,

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관련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명 및 안 제조1부터 제3조까지, 제5조, 제6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임.
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(안 제명, 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	**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**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환경공무관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.

○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은 88올림픽 당시 정부에서 공공과 민간영역 구분 없이 일괄 지정 30년 넘게 사용, 도로청소, 주민홍보 및 계도 등 다양한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, 명칭에 대한 거부감 및 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함. 이에 2016년 서울특별시청 노·사협의회에서 신분증 및 각종증명서 발급 등 대외 직명을 공무관으로 협의함.

또한 환경미화원 명칭개정 설문조사에서 78명 전원이 환경공무관을 선호함.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등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, 타당하다고 사료됨.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처음 명칭 사용함.

관계법령

□ **「지방자치법기본법」**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